

교직원주택 운영지침

제1조 (목적) 이 지침은 서울신학대학교 교직원에게 제공하는 주택(이하 “주택” 이라 한다)의 관리 및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용어의 정의)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“주택”이라 함은 서울신학대학교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산으로서 총장, 외국인 교수 및 교직원들의 거주용으로 사용 또는 사용하기로 결정된 주택과 그 부속 시설을 말한다.<개정 2017. 4. 26.>
2. “사용자”라 함은 주택을 사용 또는 사용하기로 결정된 자를 말한다.
3. “외국인 교수”라 함은 외국어분야의 교육·연구 목적으로 교원인사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외국국적의 교원으로, 계약에 의해 주택을 제공받기로 한 자를 말한다.

제3조 (주택의 제공) 학교소유의 주택을 구입하여 제공할 수 있는 대상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.<개정 2013. 9. 1.>

1. 총장.<개정 2017. 4. 26.>
2. <삭제 2017. 4. 26.>
3. 외국인교수. 단, 사택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 소정의 주택보조비를 지원하며 금액은 총장이 정한다.
4. <삭제 2013. 9. 1.>
5. 기타 (대학발전에 공로가 있거나, 대학운영상 불가피하게 거주가 필요한 자)

제4조 (주택의 규모) 제3조에 의한 제공주택의 규모는 국민주택(전용면적 기준 85㎡ 이하인 주택) 상당 규모로 한다. 다만, 총장의 경우에는 인근지역 대학의 총(학)장 공관 규모를 적용한다.

제5조 (제공기간) 제공기간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.

1. 총장 : 재직기간으로 한다.
2. <삭제 2017. 4. 26.>
3. 외국국적 교원 : 임용계약기간
4. 무주택 교직원 : 제공계약기간
5. 기타 거주자 : 제공계약 및 임용계약기간

제6조 (주택의 사용료) 주택의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.

1. 총장 : 무상
2. <삭제 2017. 4. 26.>
3. 외국국적 교원 : 무상
4. 무주택 교직원 : 제공계약에 의한다.
5. 기타 거주자 : 제공계약에 의한다.

제7조 (관리의무 등) ① 제 3조와 같이 주택을 제공 받은 자는 당해 주택의 기능유지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, 주택관리비 등 주택사용에 따른

제반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고,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
1. 거주목적 이외의 사용금지
2. 양도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의 금지
3. 주택 및 그 부속시설의 구조변경의 금지
- ②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파손 및 훼손하였을 경우에 그 원상복구의 책임을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.
- ③ 주택내의 비품은 회계규정에 따라 관리의무가 있으며 이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사용자가 변상하여야 한다.
- ④ 제공기간이 경과되었을 경우에는 비품목록에 의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.

제8조 <삭제 2017. 4. 26.>

제9조 (주택의 관리 책임) 주택의 관리는 총무처 관리계에서 한다.

제10조 (보칙) 본 지침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른다.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지침은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② (지침의 폐기) 이 지침은 기획위원회의 심의와 총장의 결재로 폐기한다.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지침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개정 지침은 2017년 4월 26일부터 시행한다.